○ [참고1] 취약계층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4조	인구감소지역(특별시 제외) 거주 확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참고2]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사항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	
	│ 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차상위계층	<u>50</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준주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조손 가정의 자녀	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디모칭 기저이 되너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HANGET EL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니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치비미 기조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현보묘기조'이기 묘지기조 또는 보지기조용 마취명 지역대사자는 여성기조보 자기의 최고생계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 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 일반 호자가족(호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다 나비지 기즈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도서 벽지 거주자 - '도서벽지'라 자르아를 마시고 되어 하는 지역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단지역/낙도/수복자다/접적자다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교육시원대경자도 공모되거다 교육시원대경자증경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재원자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약교성 수선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자치단체장 추천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9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1.10.19 기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중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동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